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306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1년 7월 2일
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정의를 보완하고,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권한을 상위법령에 맞추며,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학생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제3호).
- 학교폭력 지원기관을 기능에 맞게 조정함(안 제2조제5호, 제4조제1항 제3호, 제8조제1항 및 제2항).
-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의 관한 사항을 조정함(안 제5조제2항 제1호 및 제6조제3항).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로 하고,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학생”이란 제2조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한다.

안 제1조제6호(중전 안 제1조제5호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“청소년시설 등”이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

안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의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지원

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“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”를 “매년 시행계획 수립”으로 한다.

안 제5조제3항과 안 제5조제4항 중 “경찰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경찰청장”으로 하고, 안 제5조제4항 중 “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

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.”를 “제5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안 제6조제3항 중 “시장이”를 “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”로 한다.

안 제8조 조제목을 “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”으로 하고, 안 제8조제1항 중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.”를 “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관련 청소년시설 등으로 연계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안 제8조제2항 중 “ 학교 밖 지원센터는”을 “청소년시설 등은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〈 수정조문대비표 〉

제 정 안	수 정 안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	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한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(제정안과 같음)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학교폭력”이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 2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.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제정안과 같음) 2. (제정안과 같음)
<p style="margin: 0;">< 신 설 >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. “<u>학생</u>”이란 제2조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한다. 4. “가해학생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. 5. “<u>피해학생</u>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. 6. “<u>청소년시설 등</u>”이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「<u>청소년복지 지원법</u>」 제29조에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. “가해학생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. 4. “피해학생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. 5. “<u>학교 밖 지원센터</u>”란 「<u>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. “가해학생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. 5. “피해학생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. 6. “<u>청소년시설 등</u>”이란 「<u>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「<u>청소년복지 지원법</u>」 제29조에

6.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”이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.

제4조(사업 및 예산지원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학교폭력예방 홍보·교육
2. 학교폭력 가해·피해 학생,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

3.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지원 센터 연계지원

4.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) ①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
2.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·치

다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

7. (제정안과 같음)

제4조(사업 및 예산지원) ① (제정안과 같음)

1. (제정안과 같음)
2. (제정안과 같음)

3.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의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지원

4. (제정안과 같음)

② (제정안과 같음)

제5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) ① (제정안과 같음)

② (제정안과 같음)

1.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(제정안과 같음)

료·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

③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,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교육감과 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 1부시장으로 한다.

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(당연직은 재임기간)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

3. (제정안과 같음)

③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,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교육감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제5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할 수 있다.

제6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등) (제정안과 같음)

② (제정안과 같음)

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(제정안과 같음)

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 임 위원회 남은 임기로 한다.

⑤ 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조에 의한다.

제8조(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) ①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.

② 학교 밖 지원센터는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연계된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⑤ (제정안과 같음)

제8조(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) ①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관련 청소년시설 등으로 연계할 수 있다.

② 청소년시설 등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연계된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

제1조 이 조례는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,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폭력”이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
2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.
3. “학생”이란 제2조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한다.
4. “가해학생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.
5. “피해학생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.
6. “청소년시설 등”이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
7.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”이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

법률」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상담기관 등에서 건의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 및 예산지원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학교폭력예방 홍보·교육

2. 학교폭력 가해·피해 학생,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

3.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의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지원

4.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) ①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”

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·치료·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

③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,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교육감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제5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할 수 있다.

제6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.

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(당연직은 재임기간)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 남은 임기로 한다.

⑤ 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조에 의한다.

제7조(비밀준수 의무)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·피해학생 및 신고자·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) ①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관련 청소년시설 등으로 연계할 수 있다.

② 청소년시설 등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연계된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·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0조(표창) 시장은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·공무원·개인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